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4호

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북한이탈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문제, 정체성과 취업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, 현행 조례상 특별히 배려·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□ 상위법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“청년”을 추가하여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